##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89

발의연월일: 2021. 4. 20.

발 의 자: 맹성규·강병원·강선우

김경협 · 김민석 · 민병덕

소병철・신정훈・이광재

장철민 · 정일영 · 조승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 및 운용되면서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음.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장애인 접근성 보장 여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는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무 인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무인화기기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무인화기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주문·결재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운용하는 자는 무인화기기를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의3(무인화기기 접근·이용의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무인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의 증진을 위한 설계·제작·가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무인화기기를 설계·제작·가공하는 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 설&gt;</u>	개 정 안 제23조의2(무인화기기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무인화기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의주문ㆍ결재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를 설치ㆍ운용하는 자는무인화기기를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조대·거두아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3(무인화기기 접근·이용의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의의무) ① 국가는 무인화기기의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무인화기기에 대한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의증진을 위한 설계·제작·가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하고 무인화기기를 설계·제작·가공하는 자에게 그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